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 번 호	618
-------------	-----

제출년월일 : 1997. 9.

제출자 : 안산시장

□ 개정이유

- 국유재산법 시행령상의 국유재산제도와 공유재산관리조례상의 공유재산제도가 불균형하여 형평을 기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 국가경쟁력 10%이상 높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적극적인 지원책 강구가 필요하여 내무부 개정준칙안이 시달되고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시키는 것임

□ 주요골자

-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를 허용 (안 제22조 제7호)
-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을 인하 (안 제23조 제6항)

□ 참고사항

- 근거법령
 -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 (대부요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 (대금납부와 연납)
- 예산상황 : 해당없음
- 기타참고사항
 - . '97년도 공유재산관리지침 (조례준칙)
 - [경기도 회계 13330 - 328 ('97. 2. 11)]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중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 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의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23조중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⑥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1000분의 25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23조 제6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부과되는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부터 적용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기 정 안
<p>제22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생 략 1 - 6. (생 략) (신 설)</p>	<p>제22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1 - 6. (현행과 같음) 7.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 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개발 사업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 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 단체가 유치한 공장의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p>
<p>제2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① - ⑤ (생 략) ⑥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 단체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 또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 인가를 받은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1,000분의 25로 한다. ⑦ (생 략)</p>	<p>제23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주거용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1,000분의 25로 한 다. ⑦ (현행과 같음)</p>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 주요내용

○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 제7호 신설

7.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 개발사업 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 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 가 유치한 공장의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 하는 경우

○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제⑥항 개정

(개정전)

⑥ 1981년 4월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토지 또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1,000분의 25로 한다.

(개정후)

⑥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1,000분의 25로 한다.